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정일영 · 서영석 · 박지원
안도걸 · 권향엽 · 손명수
민홍철 · 박지혜 · 김영환
김종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.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(허위발급 시 5%, 명세 미작성 시 0.2%)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,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%,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%, 명세 미작성 시 0.5%로 강화하고,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%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.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·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,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75조의4).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100분의 5”를 각각 “100분의 1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천분의 2”를 “1천분의 5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은 내국법인이 가산세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국세청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(법인·단체 등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으로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·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)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)

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5조의4(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)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경우</p> <p>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[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 (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</p>	<p>제75조의4(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
 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
 액으로 한다)과 건별로 발
 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
 액을 말한다]의 100분의 5
 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
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
 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
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
분의 5

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
 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·보
 관하지 아니한 경우: 작성·
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
분의 2

<신 설>

② ~ ④ (생략)

 -----100분의 10

나. -----

 -----100
분의 10

2. -----

 -----1천분의 5

②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
 과받은 내국법인이 가산세를
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
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
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
 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
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
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
 항까지와 같음)

<신 설>

⑥ 국세청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(법인·단체 등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으로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·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)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